

2018년도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안내문

※ 신청시 유의사항 : 기 급식지원자는 재신청 불필요

■ 급식신청기간 : 2018. 12. 03.(월) ~ 12. 21.(금)(집중 접수기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8년 겨울방학 중 아래 급식지원기준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화 신청 (아동급식 담당자에게 전화로 급식신청 후 신청관련 필요서류 FAX나 우편제출)
- ②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 및 신청관련 필요서류를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 ③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관련 필요서류 지참)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 작성시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방법 : [] 지정음식점, [] 도시락, [] 기타 (방학기간 학교 중식)

※ 동 조사는 희망방법 조사로서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공통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신분증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최근 3개월) - 고용임금확인서(건강보험 미가입자)
지원사유 [결식우려에 해당하는 서류 필히 제출요망]	- 보호자 가출시(가출확인서), 수감시(수용증명서), 질병시(소견서) 등 - 근로활동시(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담임교사, 통·반장, 이웃 등의 추천서 등

■ 동 주민센터 연락처

동명	담당자 연락처	동명	담당자 연락처
효성1동	450-4715	작전1동	450-4814
효성2동	450-4733	작전2동	450-4834
계산1동	450-4751	작전서운동	450-4855
계산2동	450-4777	계양1동	450-4865
계산3동	450-4796	계양2동	450-4900
계산4동	450-4965	계양3동	430-7916

■ 급식 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중위소득 52% 이하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참고자료 : 2018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869천원	27,572(29,607)	4,704(5,051)	28,497(30,600)
2인가구	1,480천원	46,438(49,865)	18,867(20,259)	46,800(50,254)
3인가구	1,915천원	59,850(64,267)	38,276(41,101)	60,596(65,068)
4인가구	2,350천원	74,142(79,614)	65,213(70,026)	74,856(80,380)
5인가구	2,785천원	86,958(93,376)	88,155(94,661)	87,580(94,043)
6인가구	3,219천원	100,955(108,405)	108,657(116,676)	102,190(109,732)
7인가구	3,654천원	114,241(122,672)	128,071(137,523)	115,568(124,097)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서식 1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취학여부
		[] 남 [] 여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취학여부
		[] 남 [] 여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부식 배달 ☐ 기타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
○
○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